#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7707

발의연월일: 2025. 1. 22.

발 의 자 : 박정현 의원(1인)

찬 성 자:169인

# 제안이유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보조금의 규모가 매년 감소하여 국회는 2024년 9월 19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음.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어떤 정확한 근거 없이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음.

이에 현행 58개의 법률과 마찬가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를 담는 내용을 담아 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는 한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예산 신청을 받고, 행정안전부장관이이를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일각의 우려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여력에 따라 보조금 예산 신청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

는 한편,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차등보조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음.

# 주요내용

- 가. 법의 목적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유에 지역 균형발전을 추가하여 기존 경제정책 관점과 더불어 지역 내 균형 있는 경제 진흥책으로서의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1조및 제4조제1항).
-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다. 국가와 시·군·구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제1항).
-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국가재정법」 제31 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신청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 내용을 감액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신설).

- 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7항 신설).
- 사.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실시를 재량규정에 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함(안 제15조의2).

#### 법률 제 호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2. 지역사랑상품권의 재원에 관한 사항
  -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유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

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을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는 제외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를 "지역사랑상품권의"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예산요구서에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 내용을 감액하여 반영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예산요구서에 반영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29 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⑦ 국가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인 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제1 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 중 "할 수 있다"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요구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 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 제1조(목적) -----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 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 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으로 한다.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신 설> 기본계획 등) ① 행정안전부장 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 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 관한 사항

- 2. 지역사랑상품권의 재원에 관한 사항
-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유
  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 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법 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할 수 있다.

## ② ~ ④ (생 략)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라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 보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 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 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 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기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 역 균형발전을-----
  - ② ~ ④ (현행과 같음)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 (시・군・자치구는 제외한다)-----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하여야 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야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 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 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출하는 경우 해당 예산요구서 에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 하여 그 신청 내용을 감액하여 반영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예산요구서에 반영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 별 지출한도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제15조의2(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효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 랑상품권의 이용 현황 및 관련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 사를 할 수 있다.

② (생략) <신 설>

⑦ 국가가 「국가재정법」 제3 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 역에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지역의 재정부담 능력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실태조사) ① -----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 다.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